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1호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하고, 제2호중 “취득한”을 “지득한”으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해촉)----- -----</p> <p>1. <u>위원회의</u>----- 2. -----취득한----- 3~6.(생략)</p>	<p>제8조(위원의 해촉)----- -----</p> <p>1. <u>위원의</u>----- 2. -----지득한----- 3~6.(개정안과 같음)</p>

의안번호	제 103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 .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3
----------	-----

제출년월일 : 1999. 8.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 정 이 유

- 건축법의 개정(1999.2.8 법률 제5895호)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1999.4.30 대통령령 제16284호)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 등을 폐지하고,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적용의 완화 제도 개선(안 제3조).

-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완화되는 법조항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완화적용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정함

나.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 개선(안 제4조).

- 건축법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허용 기준 명시
 - 기존건축물의 재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안 제20조).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용도만을 허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제한규정도 폐지하여
-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함

라. 건축사 업무대행제도 개선 (안 제21조).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를 건축사에 전면 위임하였던 것을
- 5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에 한하여 위임하고, 업무대행의 건축물은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조사하도록 함

마. 대지안의 조경식재 기준 개선(안 제23조).

-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과 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건조장 등에 대한 조경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골프연습장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 등이 불필요하거나, 조경식재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의무를 면제 하였으며
- 식재 등 조경기준중 조경면적의 최소기준, 최소폭, 옥상조경 방법 등을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에 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함

바.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 (안 제25조).

-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완화 (안 제26조 내지 제38조).

-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을 완화하되 시민생활에 위험요소가 내포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에 따라 조문 정리
- 일반주거지역
 - 장의사 및 동물병원 허용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허용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설치 금지
- 준주거지역
 - 공장의 경우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이하인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허용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소는 설치 금지

— 일반상업지역

- 단독주택의 경우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
- 공장의 경우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이하인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설치 금지

아.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폐지 (중전의 제43조 내지 제59조).

- 미관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은 1년 유예기간(2000. 5. 9)후에 폐지함
- 미관심의제도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즉시 폐지('99. 4. 30)

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와 분할제한 (안 제49조).

- 이미 발생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대지(자투리땅)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소규모필지로 분할하는 것은 계속 제한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기타지역 : 60제곱미터

차. 일조기준 개선 (안 제52조).

-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미터이하의 부분은 1미터, 8미터이하의 부분은 2미터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66조 및 별표 5).

- 조례에 위임된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을 위반 유형별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 범위안에서 정함

타. 상위 법령에서 폐지된 관련규정 삭제 (중전의 제5조, 제18조, 제27조, 제28조, 제69조 및 제70조).

- 현장관리인, 건축종합민원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3.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건축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제15조, 제23조, 제32조, 제45조 내지 제49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7 및 제83조

○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5조, 제20조, 제24조, 제27조, 제65조, 제68조, 제73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6조, 제86조의2, 제113조, 제118조 및 제121조

나. 입 법 예 고('99. 6. 19)결과 특기사항 없음

다. 규제개혁심의('99. 6. 23)결과 완화 및 폐지 결정

라. 건축위원회 심의('99. 7. 26)결과 원안 통과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건축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 2 장 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③제1항 규정의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 의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미술,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제19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허가수수료라 함은 별 표 1과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까지로 할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2층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4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이 조에서 “대행업무”라 한다)하게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5층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용인부임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음·면 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은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 한다.
2. 은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구	분	식재밀도 (제곱미터당)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이상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4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본수를 산정함에 있어 흉고직경 12센티미터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인 경우 교목 4본으로 산정하며, 직경 1미터이상의 관목의 경우 또한 4본으로 산정한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

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
각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주민공동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너비 2미터이상의
사실상의 통로

제 5 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제26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제27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영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전시장 및 동·식물원(동물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
과 영 별표 3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연면적의 4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중 동호 가목의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5.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
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영 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영 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
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의 것
- 9. 영 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10.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 11.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및 시내버스차고와 주차대수 2대이하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 12.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중요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3.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 가옥 및 나목을 제외한다)

제28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2.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 3. 영 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여야 한다)
- 4.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제27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 5. 영 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 6.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7.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8.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중요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9.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29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5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영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7.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제27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제30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6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3.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영 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5.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제27조제8호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8.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를 제외한다)
9. 영 별표 1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중 제27조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2.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 영 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5. 영 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
6. 영 별표 1제14호의 참고시설
7.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를 제외한다)
10.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2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영 별표 8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6. 영 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
7.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9.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3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영 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2.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중 동호 가목의 병원
4.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4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영 별표 1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것
3.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중 동호 가목의 병원
4.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1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영 별표 11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6. 영 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
7.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1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
3.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5.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6. 영 별표 1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1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전시장
4.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6.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육 및 아육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 1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영 별표 1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영 별표 1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서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3. 영 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
4.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
5.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3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0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 1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40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2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영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아목, 차목, 탄목에 해당하는 것
3. 영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4. 영 별표 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영 별표 1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6. 영 별표 1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연구소
7. 영 별표 1제9호의 운동시설
8. 영 별표 1제10호의 업무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9. 영 별표 1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 영 별표 1제12호의 위락시설
11. 영 별표 1제13호의 공장
12. 영 별표 1제14호의 창고시설
13. 영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영 별표 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5. 영 별표 1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 영 별표 1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영 별표 1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8. 영 별표 1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1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이하로 한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4조(건축물의 용도)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장중 제련소, 요업공장, 화학공장
2.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제45조(건축물의 높이) 시장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규칙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제 7 장 건폐율·용적률

제46조(건폐율) ①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2.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3. 준주거지역 : 100분의 70
4.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90
5.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
6.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70
7.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80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100분의 6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이하)

②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

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나. 준주거지역 : 100분의 8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이하

제47조(용적률)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 :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 그 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제48조(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이하로 한다.

1.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 0.7) × 기준용적률

2. 도시설계구역 : (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 0.8) × 기준용적률

3.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4. 상업지역 : (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제4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50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 8 장 건축물의 높이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5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

제 9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53조(건축의 제한)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4.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5. 묘지관련시설
6. 공사용 가설건축물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축물을 침수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신축(수평중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운동시설중 운동장
6.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폐차장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중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제54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조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조적조(흙벽돌조를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제55조(건축기준의 완화) 영 제86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 10 장 도시설계등

제56조(도시설계의 작성방법) ①영 제5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3 및 별표 4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3.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5. 의료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럭 등의 포장

7.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times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div 대지면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 11 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8조(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9조(회의 및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4조·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2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은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추정금액을 조정의 당사자간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 장 보 칙

제6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 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제조시설은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제2호의 저장시설은 종류에 따라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3호의 유희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위락시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제4호의 소각시설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6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영 제121조제1항 및 영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1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별표 1]

건축허가등 수수료 (제19조 관련)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 액	
200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3천원
	기 타	7천원
2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	단독주택	4천500원
	기 타	1만5천원
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	4만원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7만5천원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15만원	
3만제곱미터이상 10만제곱미터미만	30만원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60만원	
30만제곱미터이상	120만원	

※ 비고 : 허가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2]

도시설계승인시 검토사항 (제56조제1항 관련)

1.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 가. 종합적인 목표와 개발방향
 - 나. 지역특성에 따른 도시설계의 성격 및 기능부여
 - 다. 전체도시 및 인근 지역환경과의 관계와 조화
 - 라. 도시설계의 원칙·지표와 공간구성의 표준
 - 마. 토지의 이용계획
 - 바. 도시의 성장·변화에 대한 적응성
 - 사.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교통처리계획

- 가. 도심 및 주위지역 교통체계와의 연계성
- 나. 구역내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물의 설치계획
- 다. 보행자 공간과 보행동선계획
- 라.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3. 건축계획

- 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색채의 적정성
- 나.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 다. 건축규제계획
- 라. 도로 및 광장 설치계획과 조망계획

4. 조경 및 경관계획

- 가. 공공공지·공개공간의 계획
- 나. 공원·녹지의 연계계획
- 다. 자연환경·경관의 보존계획
- 라. 조경시설물 설치계획과 가로변 식재계획

5.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 가. 공공시설의 규모, 배치와 서비스 기능
- 나. 공급처리 구조와 공동구의 계획
- 다. 하수처리 및 공해방지계획

6.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 가.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자원소요판단과 자원조달계획
- 나. 집행주체별, 연차별 투자계획

7. 기 타

- 가. 특별사업구역의 지정의 적정성 및 개발계획
- 나. 제한·권장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 다.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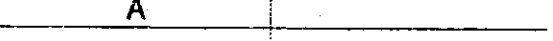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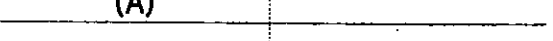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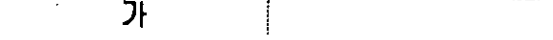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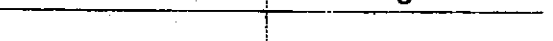






도시설계 용어정의(제56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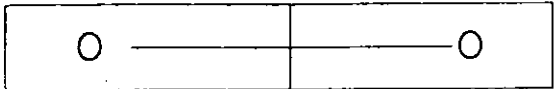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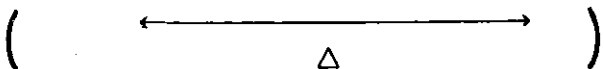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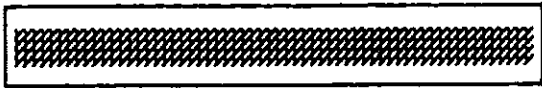
1. “설계구역”이라 함은 도시설계를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3.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선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6.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7. “1층 전면 권장용도”라 함은 보행공간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 전면부에 필요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 용도로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를 말한다.
8. “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대형대지에 대하여 도시설계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가능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9.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10. “공공주차통로”라 함은 2이상의 대지에 주차장 출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차량출입통로를 말한다.
11. “차량출입허용구간”이라 함은 대지안으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12. “공공공지”라 함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3.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3층이하의 부분으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안의 공간을 말한다.
14. “벽면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에 있어서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아니되는 선을 말한다.
15. “공공조경”이라 함은 도시설계에서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식수방법 등에 따라 조경을 하는 것을 말한다.

16.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로서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17.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법상 도로로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도로를 말한다.
18.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도로법 등 관계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19. “최고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0. “최저층수”라 함은 도시설계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말한다.
21. “공공주차장”이라 함은 도시설계사업주체에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공공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22. “완충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하여 도로의 기능 또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녹지를 말한다.

[별표 4]

도시설계의 규제도표시기호(제56조제2항 관련)

구 분	표 시 기 호
도시설계구역	 (굵은 이점 쇄선)
대지경계선	 (가는 일점 쇄선)
대지분할가능선	 (가는 점선)
도로경계선	 (가는 실선)
고가도로, 지하도로	 (가는 이점 쇄선)
건축물허용용도	
건축물권장용도	
건축물불허용도	
최고층수제한	
최저층수제한	
건축한계선	 (굵은 점선)
건축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구 분	표 시 기 호
공동개발	
주차장출입 허용구간	
주차출입불허구간	
공공용지	
공공주차장	
완충녹지	

[별표 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제66조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1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법 제16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지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	법 제3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5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6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2호서식)

건축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분쟁대상 건축물 현황	위치				면적	
	지역		지구		지목	
	용도		구조		공사종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지상 층
	건폐율	%	용적률	%		지하 층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사 유및당사자 간교섭경과						

건축법 제7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분쟁발생사유 및 당사자 간 교섭 경과			

건축법 제76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출석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자격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		
출석장소			
<p>건축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산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p> <p>(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p>			
<p>※ 주의사항</p> <p>○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5호서식)

건 축 분 쟁 조 정 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파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정안				

건축법 제7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물량신청)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자금의신청)①읍· 면·동장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 신청서 별지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사업물량신청) 읍·면·동장이 주택 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 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제1호서식】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물량 신청서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 사업물량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읍·면·동	건 축 주		사업장 위치	비 고
	주 소	성 명		
계				

년 월 일

○ ○ 읍·면·동장(인)

서산시장 귀하